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1년 12월 20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1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01. 12.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신 기호)

가. 제안이유

○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존생활보장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용(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을 신설 (안 제 13조)
- 기금의 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운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정으로 관리함을 신설 (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을 심의 하는 기능을 신설 (안 제7조)
- 기금결산 보고일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였으나 80일 이내로 변경(안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 운영 :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 (안 제6조 제3항과 제5항, 안 제7조 제2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근수)

○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행자부 기금운영 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 조례안 예시에서도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기금의 운용은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제43조에 의해 조성·운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직무에 있어서 우리 구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 상충된 조항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삭제하였으며

○다만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은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따로 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사업 관련 기금이 각각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 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 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하며,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대상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항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자녀장학금,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 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재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li style="padding-left: 20px;">〈신설〉 2. (생략) 3. (생략) 	<p>제3조(기금의 재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영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p>제4조(기금의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li style="padding-left: 20px;">〈신설〉 	<p>제4조(기금의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li style="padding-left: 20px;">〈신설〉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 style="padding-left: 20px;">〈삭제〉</p>

현행	개정안
<p>④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①(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 <신설></p> <p>3. (생략)</p> <p>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기금의 결산)</p> <p>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p> <p>②(생략)</p> <p> <신설></p>	<p><삭제></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대상</p> <p>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제12조(기금의 결산)</p> <p>① ----- 80일 이내 -----</p> <p>-----</p> <p>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 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에 따른다.</p>